

# WTO시대 각국의 방송서비스 규제 정책 비교(Ⅱ)

책임연구원 한 은 영\*

WTO 출범과 함께 방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의 양허협상이 진행되면서 국내 방송시장 개방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해외방송 프로그램 및 자본의 국내 유입 형태를 비롯하여, 방송서비스 양허협상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유규제와 편성규제(수입쿼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들의 방송 규제정책 및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탈규제, 개방시대에 적합한 규제 정책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 목 차

(지난호에 게재)

- I. WTO 서비스 협상과 방송서비스
- II. 해외방송 및 자본의 국내유입 형태
  - 1. 프로그램 단위의 유입
  - 2. 채널 단위의 유입: 재전송
  - 3. 해외자본의 유입
- III. 국내 방송규제 현황
  - 1. 소유 규제
  - 2. 편성 규제

- 3. 채널 구성 규제

(이번호에 게재)

- IV. 주요국가들의 방송규제 현황 및 비교
  - 1. 소유 규제
  - 2. 편성 규제
  - 3. 기타 규제
- V. WTO시대 방송서비스 규제정책 방향

## IV. 주요국가들의 방송규제 현황 및 비교

### 1. 소유 규제

세계 주요국가들의 외국인 소유규제 현황은 <표 10>과 같다. OECD(2001)에 따르면, 29개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등 11개국은 외국인에 대하여 소유규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락처: \* 통신·방송정책연구실(02) 570-4236, hey@kisdi.re.kr

세계 주요국가들의 소유 규제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방송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가 강하다. 이것은 지상파 매체가 갖는 영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유시장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일본도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를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와 말레이시아도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금하고 있다. 외국인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보통 25% 이내 수준(49% 개방하고 있는 멕시코는 제외)에서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둘째,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은 지상파방송보다 상대적으로 개방의 폭이 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쿼터는 20~49%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20%, 스페인이 25%로 33%인 우리보다 개방의 수준이 낮고, 호주가 35%, 인도, 오스트리아, 멕시코가 49%로 우리보다 개방의 수준이 높다.

셋째,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일본이다. 영국의 경우, 케이블TV 산업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하여 '88년 후반 미국 벨(Bell)계 전화회사로부터의 외국자본 투자를 비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이후 '90년 방송법에 의해 비로소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EC 이외 지역의 외국자본 참여가 합법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를 인정함에 따라 '84년에 이미 외국자본이 전체 케이블TV 자본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활성화되었다. '96년 개정된 영국 방송법은 외국자본 유입을 완전 개방함으로써 자국 내 방송산업을 발전시키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자유시장 원리가 강조되고 민영화가 적극 추진되었으며, 외국자본의 투자 제한을 두지 않아 영국에서는 비 국내 위성방송인 BSkyB가 유일한 위성방송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99년 케이블TV법을 개정하여 외자유제를 완전 철폐하여 자금조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새로운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탁방송사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는 외국자본의 지분참여 허용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렇듯 일본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외국기업에게 방송사업자 허가를 내주어 경쟁을 통한 다채널 사회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채널 부문은 외국사업자의 사업 허가를 반려했던 바 있는데, 이것은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문화적 장벽으로 해석된다.<sup>20)</sup>

---

20) 정용준(2000).

〈표 10〉 세계 주요국가들의 외국인 소유규제 현황

지역	국가	규제내용
OECD 국가	한국	지상파방송, 중계유선방송, 종합 및 보도 채널: 금지 케이블TV,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 및 보도 채널 제외): 33% 소유 제한 전송망사업: 49% 소유 제한
	일본	지상파방송 허가 및 프로그램 공급업자(program supplying) 승인에 대한 제한 1) 외국인, 외국 정부 및 외국법인 2)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가 임원인 법인 또는 회사 3) 전체 투표권의 1/5 이상이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있는 경우 케이블TV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은 1999년 모두 철폐
	호주	지상파 상업방송사에 대한 외국인 경영(control) 금지 (외국회사의 총지분을 20% 제한, 외국인 이사 선임 20% 제한) 유료TV에 대해 외국인 1인의 지분을 20%로 제한하고 외국인 전체 지분을 35%로 제한
	미국	외국인에게는 지상파방송 면허 불허 외국인 소유지분이 20% 이상인 기업,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타 기업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 면허 불허 (케이블TV, 위성방송은 20~49%의 범위로 제한-최현철, 2001)
	캐나다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라디오에 대해 공히 20% 이상의 소유지분 제한, 모회사에 대해서는 33.3% 소유제한
	멕시코	49% 소유지분 제한
	영국	전국 및 지역 상업TV, 국내 위성방송, 전국 및 지역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은 영국 국민 및 EC 회원국 국민 또는 그와 같은 국가에 등록된 법인체에 한함 케이블TV, 비국내 위성 서비스, TV/라디오 디지털 멀티플렉스 서비스, 디지털 TV 프로그램 서비스, 디지털 사운드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 규제 없음
	프랑스	(EU 회원국이 아닌 외국인의 방송사 자본 혹은 방송사 면허를 소지한 회사 자본의 20% 소유 제한-최현철, 2001)
	독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프로그램 내용이 독일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에서만 승인됨. 또한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TV 면허시 독일 국내인 및 유럽인에게 우선권 부여. 따라서 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EU지역 이외의 외국인 소유는 사실상 불가능함
	스페인	지상파방송에 대해 25%의 소유지분 제한(EU자분은 외국자분으로 간주하지 않음) 케이블TV는 25% 이상 외국인 지분 소유시 정부의 승인 필요
	그리스	회사의 본부는 EU국가에 두어야 하며, 법적 대표자 중 최소 1인은 그리스 거주자일 것
	오스트리아	EU 이외의 외국인 기업은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대해 49% 소유지분 제한, 민영 라디오 방송국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25% 소유지분 제한
	폴란드	외국인 및 33% 이상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소유 금지
	스위스	스위스 거주 외국인 혹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외국 법인에만 방송면허를 승인함(스위스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국가에 한함)

초 점

지역	국가	규제내용
기타 아시아 국가	중국	합자 혹은 합작 형태를 통한 방송 제작 허용, 방송송신 분야는 소유 금지
	대만	지상파방송은 대체적으로 20%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대한 직접 투자는 50%, 대만 현지 등록법인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50%의 간접투자도 허용
	싱가폴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의 상한선은 3%
	인도	지상파방송: 외국인, 외국인 공동경영자(파트너)가 있는 회사 및 인도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에게는 허가, 소유 및 경영을 금지함 위성방송 등 기타 방송서비스: 49%까지 외국인 투자 허용(단, 경영권은 인도인 주주 또는 인도 기업에게 있어야 함)
	인도네시아	민영TV방송: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 및 인도네시아 국민에 의해 소유된 회사로 제한(외국인 투자는 49%까지 허용)
	말레이시아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지
	태국	외국인 소유 금지(단, 외국 미디어 기업의 지역 미디어에 대한 주식보유는 허용)

주: OECD 29개 국가 중 11개국(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은 외국인에 대한 소유규제 없음.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터키 등 4개국은 자료 없음.

자료: ① OECD 국가: OECD(2001)

② 기타 아시아국가: 최현철(2001) 참조

넷째, 유럽경제지역(EEA)이라는 단일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있는 EU 회원국들은 EU 자본을 외국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EU자본을 외국자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국가가 스페인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EU 회원국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 방송사 자본 혹은 방송사 면허를 소지한 회사 자본의 소유를 20%까지 제한한다. 독일은 지상파방송 및 케이블TV 면허시 독일 국내인 및 유럽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EU지역 이외의 외국인 소유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는 EU국가 내에 방송사 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EU 이외의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에 대해 49%로 지분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앞에서((그림 4)) 살펴본 듯이 대만,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동북아 및 동남아 시장이다. 이 지역은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입증된 지역인 만큼 이 지역 국가들의 방송 규제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 중 대만, 싱가포르, 중국 세 국가의 방송 개방정책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sup>21)</sup>

21) 세 국가의 내용은 최현철(2001), 주로 참조.

이들 국가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정책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만은 아시아에서 방송시장 개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90년대 말 아시아의 경기침체가 회복된 이후 대만은 외국자본의 개방정책을 도입하였다. 대만은 '99년에 새로운 케이블과 위성TV법안을 통과시켜 케이블과 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50%까지 완화하였으며, 대만 현지 등록법인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외국인 간접투자를 허용하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에는 서구 국가들보다도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분명한 법적 허용한계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20% 정도 내외에서 외국자본의 투자가 허용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두 번째 규모의 타이완(Taiwan)TV는 일본의 후지(Fuji)TV, 도시바(Toshiba), 히타치(Hitachi), NEC 등 일본계 자본이 20.51%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폴도 대만과 함께 방송시장을 빠른 속도로 개방하고 있는 국가이다. 싱가폴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국제적인 방송사업자들을 자국 내에 적극 유치하는 등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다른 주요 분야에서 포괄적인 개방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의 상한선은 3%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싱가폴에서 최근 이루어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허가에서는 정부투자회사인 SPH (Singapore Press Holdings)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가 배제된 바 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자본의 진입을 가장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지난 '97년 9월 중국정부는 외국자본 및 민간자본의 방송 참여를 강력히 규제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모두 6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된 '광과전시관리조례(廣播電視管理條例)'는 외국자본의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외국간의 합작이나 외국자본의 제한적 참여에 대해서도 엄격히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폐쇄적인 중국의 방송시장도 WTO 가입을 전후하여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다. 현재 외자 유입과 관련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외국 자본이 중국과 합작 혹은 합작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외자 독자, 중외 합자, 중외합작 등의 경영형태를 띤 방송사나 프로그램 제작 경영기구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자가 방송 송신 분야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부분이 중국이 외자에 대하여 개방하지 않는 있는 분야이다.

## 2. 편성 규제

### 가. OECD 국가들의 국내 제작물 편성 규제 현황

OECD 국가들의 국내 제작물 편성 규제 현황을 특징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국가들은 각기 자국의 상황에 적합한 편성쿼터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 영상산업 보호를 위해 편성쿼터제와 함께 제작투자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투자 의무 조항을 가진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멕시코, 폴란드 및 EU 회원국 등이다.

둘째, 국내제작 쿼터가 없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체코, 터키이며, 멕시코는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만 국내제작 쿼터가 없다. 자국내 영상산업이 매우 발달한 국가인 미국과 일본은 세계적인 콘텐츠 수출국으로 국내제작 쿼터가 없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상파방송에서 외국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5% 전후에 불과해 외국 프로그램 유입에 따른 일본 프로그램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에서는 채널 성격에 따라 전량을 외국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전문채널도 있는 등 상당량의 프로그램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

셋째, OECD 국가들의 국내제작(EU제작물 포함) 편성 쿼터는 평균 50~6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와 비교할 때, 지상파방송의 경우 쿼터가 80%로 수치가 높은 편이나 투자쿼터 등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심한 국가로 분류할 수 없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사들의 실제 국내 제작물 편성율은 80%를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쿼터 수준을 이 보다 더 낮추어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유럽 18개국의 경우 유럽연합(EU)의 '국경없는 텔레비전(Television Without Frontiers)<sup>22)</sup> 강령을 기본적으로 준수한다. 여기에 언어쿼터, 콘텐츠 유형별 쿼터, 투자쿼터 등 각 국가별로 상황과 여건에 맞는 기타 규제가 추가로 존재한다. '국경없는 텔레비전' 강령은 유럽경제지역(EEA) 국가들 사이의 방송 및 관련 시장을 확대 발전시키고 방송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EU 강령은 유럽제작물 쿼터, 독립제작물 쿼터, 신규작품 쿼터의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유럽제작물 쿼터는 '적정 시간(relevant transmission time)<sup>23)</sup>에 '상당 비율(majority proportion)'을 유럽제작물로 편성할 것으로 규정하며, 독립제작물 쿼터는 편성시간의 10%, 혹은, 제작 및 구매비용의 10%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유럽제작물에 할당할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신규작품 쿼터는 독립제작물 중 적당량(suitable amount)을 최근 5년 이내의 신규작품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EU 강령에 부합되도록 유럽 내 18개국은 각 국가의 사정과 형편에 맞는 국가별

22) 1989년 10월에 채택된 후 1997년 6월에 수정됨. 이 강령은 EU 회원국 15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내 3개국(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따르고 있음

23)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는 '적정 시간'의 개념을 규정할 때 뉴스, 스포츠, 게임, 광고, 텔레텍스트 서비스, 텔레쇼핑 등은 제외하고 있음. 프랑스, 독일, 이태리는 이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 장르를 배제시키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텔레쇼핑을 포함하고 있음.

편성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표 11> OECD 국가들의 국내 제작물 편성 규제 현황

지역	국명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아시아	한국	80% 이상 자국제작물이어야 함.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 대해 개별 쿼터가 적용됨	50% 이상 자국제작물이어야 함.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 대해 개별 쿼터가 적용됨	
	일본	없음		
북중미	캐나다	CBC는 60% 이상 자국제작물이어야 함. 민영방송사는 전체방송시간의 60% 이상, 06~24시의 50% 이상 자국제작물이어야 함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은 자국제작물이 50% 이상(majority)일 것. 2,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방송사업자(distributors)는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을 자국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에 할당해야 함	
	미국	없음		
	멕시코	없음	80% 이상은 스페인어 프로그램일 것(최초 제작, 자막, 더빙 포함)	
오세아니아	호주	06~24시 방송편성 중 55% 이상이 자국제작물이어야 함	드라마TV는 연간 프로그램 제작구입비의 10% 이상을 자국 드라마에 투자할 것	아날로그 서비스는 지상파방송과, 디지털 서비스는 케이블과 같은 규정이 적용됨
	뉴질랜드	없음		
기타 유럽	헝가리	자국제작물이 20% 이상이어야 함	n.a.	n.a.
	체코	없음		
	폴란드	유럽제작물 쿼터 50% 이상. 여기에는 폴란드 쿼터(방송사별로 35~60%)가 포함됨		
	스위스	의무사항은 각 방송사별로 면허를 통해 지정됨		
EU 국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EU 강령(Television Without Frontiers)에 따라, 세부 규제 사항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유럽제작물 쿼터: '적정 시간'의 '상당 비율'을 유럽제작물로 편성함 - 독립제작물 쿼터: 편성시간의 10%, 혹은 제작 및 구매비용의 10%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유럽제작물에 할당함 - 신규작품 쿼터: 독립제작물 중 적당량을 최근 5년 이내의 신규작품으로 편성			

자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2002), \* EIM(2001) 참조, 그 외 OECD(2001).

EU 회원국 중 대부분은 EU 강령에 따라 적정 시간의 '상당 비율(majority proportion)'을 유럽제작물에 편성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절반 정도의 회원국들은 '상당 비율'이란 용어 대신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EU 강령대로 '상당량'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같은 나라는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60%로 가장 높고, 그리스가 51%,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편성시간의 절반 이상(more than half) 유럽제작물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아일랜드, 영국은 각각 'main part', 'reasonable proportion', 'proper proportion' 이란 용어를 '상당 비율'이란 표현 대신 사용하고 있으나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다. 영국의 경우 'proper proportion'의 의미는 50% 이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표 12〉 EU 국가별 유럽제작물 쿼터 규정

국 명	'majority proportion'으로 명시	기타 다른 표현으로 명시
오스트리아	○	
벨기에 (플레미쉬어권)		biggest part
벨기에(불어권)	○	
덴마크		편성시간의 50% 이상
핀란드	○	
프랑스		유럽산 시청각 및 영화 작품에 60% 이상
독일		main part
그리스		편성시간의 51% 이상
아이슬랜드		greater part
아일랜드		reasonable proportion
이태리		월 편성시간의 50% 이상
리히텐슈타인		(규정 없음)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편성시간의 50% 이상
노르웨이		편성시간의 50% 이상
포르투갈		majority percentage
스페인		편성시간의 51% 이상
스웨덴		연 편성시간의 50% 이상
영국		proper proportion

EU강령의 독립제작물에 관한 쿼터 규정은 각 회원국에서 〈표 13〉과 같이 적용되고 있다.

적용 양식에 따라 회원국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유형은 EU강령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방송사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는 국가군이다. 이러한 국가에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의 방송사들은 편성시간의 10% 또는 예산의 10%를 독립제작물에 할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편성시간의 10%를 독립제작물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군이다. 여기에는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이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규정이 보다 엄격한 국가군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다시, 편성시간 및 예산의 10%를 모두 독립제작물에 할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포르투갈의 RTP)와 편성시간에 대한 쿼터비율이 10%보다 더 높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순히 방송시간량(편성쿼터)만이 아니라 투자해야 할 예산(제작비)에도 쿼터를 도입하는 것은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사로부터 싼 값에 프로그램을 수주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편성시간에 대한 쿼터비율이 10%보다 더 높은 국가로는 이태리, 네덜란드, 영국이 있다. 이태리의 공영방송은 편성시간의 20%를, 그리고 네덜란드의 공영방송은 편성시간의 25%를 독립제작물로 편성하여야 한다. 영국은 BBC와 민영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편성시간의 25%를 독립제작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으로는 독립제작물 편성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프랑스를 들 수 있다. 프랑스의 지상파방송은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불어로 제작되었거나 유럽 내에서 만들어진 독립제작사의 제작물에 할당하여야 한다. 독립영화 제작에 관해서는 모든 지상파방송은 자사의 영화제작비용의 75%를 독립제작사와의 계약에 할애하여야 한다. 케이블 및 위성 채널은 편성시간의 10%를 독립제작물로 편성하거나 예산의 10%를 독립제작물에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의 독특한 특징은 이러한 독립제작물 쿼터에 관한 의무사항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의무 규정서(reference: cahiers des charges)'를 통해, 그리고 민영방송의 경우에는 CSA(방송위원회)의 면허를 통해 의무사항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제작물 쿼터는 10% 요구선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독립제작물 쿼터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국가로, 여기에는 독일이 있다. 독일은 수치적인 비율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상당부분(significant part of)'의 독립제작물을 편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 13> EU 국가별 독립제작물 쿼터

국 명	편성시간의 10% (①)	예산의 10% (②)	① and ②	① or ②	기타 규정
오스트리아				○	
벨기에 (플레이쉬어권)	○				
벨기에(불어권)	○				
덴마크				○	
핀란드				○	
프랑스		○ (지상파방송)		○ (케이블 및 위성 채널)	'의무 규정서'를 통해, 또는 면허과정에서 더 높은 비율을 규정할 수 있음
독일					유럽 및 독일어권의 제작물(자체제작, 위탁제작, 공동제작)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야 함
그리스	○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TV3)				RTÉ의 경우 '상당비율(reasonable proportion)'
이태리	○(민영방송)				공영방송은 편성시간의 20%
리히텐슈타인					(규정 없음)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민영방송)				공영방송은 편성시간의 25%
노르웨이	○				
포르투갈	○		○(RTP)		
스페인	○				
스웨덴				○	
영국	○				BBC 및 민영 지상파방송은 편성시간의 25%

자료: EIM(2001).

한편,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중요한 방송 프로그램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우에는 외국 드라마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편성 쿼터가 있다.

- 외국에서 수입된 드라마는 방송국 드라마 방영 총시간의 25%를 넘지 못한다. 그 중 황금시간대에는 15%를 넘지 못한다.

-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수입물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총 방영시간의 25%를 넘지 못하며, 애니메이션 방영 시간의 40%를 넘지 못한다.

#### 나. 유럽연합(EU)의 편성 쿼터 준수 현황

##### 1) 유럽제작물 쿼터 준수 현황

EU 국가들의 유럽제작물 편성시간의 평균 비율은 '99년 60.68%에서 2000년 62.18%로 1.5%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99년에는 52.94~71.46% 범위에서 2000년에는 55.33~71.18% 범위에서 유럽제작물이 편성되었다. 단, 포르투갈만은 '99년 48.7%에서 2000년 49.5%로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였고, 룩셈부르크는 2년 모두 100% 편성 실적을 보였다. EU 회원국 15개국 가운데 12개국에서 유럽제작물 편성시간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그리스와 네덜란드에서는 약간의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변화가 없었다.

〈표 14〉 유럽제작물 쿼터 준수 현황

	총 채널 수*			유럽제작물 편성시간 평균비율(%)			쿼터 준수채널 비율(%)		
	1999	2000	증감	1999	2000	증감	1999	2000	증감
오스트리아	3	3	0	56.6	58.8	2.2	66.66	66.66	0
벨기에	17	18	1	59.29	60.23	0.94	57	67	10
독일	23	24	1	60.22	63	2.78	61	62.5	1.5
덴마크	5	7	2	60.66	61	0.34	80	71.4	-8.6
그리스	10	11	1	71.46	71.18	-0.28	100	100	0
스페인	40	45	5	52.94	58.50	5.56	70	78	8
프랑스	54	59	5	67.42	69	1.58	63	71	8
아일랜드	4	4	0	54.17	55.33	1.16	75	75	0
이태리	38	43	5	65.9	65.98	0.08	42	49	7
룩셈부르크	10	11	1	100	100	0	70	91	21
네덜란드	18	21	3	68	67.6	-0.4	61	67	6
포르투갈	7	9	2	48.7	49.5	0.8	71	78	7
핀란드	4	4	0	66.25	69.5	3.25	100	100	0
스웨덴	22	25	3	73.83	74.45	0.62	57	58	1
영국	97	116	19	64	68.8	4.8	55	53	-2
합계	352	400	48						
평균				60.68	62.18	1.5	68.58	72.5	3.93

주: \* 각 회원국이 제출한 보고서 참조(지상파방송 채널 수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케이블TV 및 위성 채널들은 누락된 경우가 있음)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2)

유럽제작물 쿼터를 준수하고 있는 채널의 평균 비율은 조사대상 기간에 채널 수가 많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년 68.58%에서 2000년 72.50%로 3.93% 증가하였다. 국가별로 '99년에는 총 채널의 55~100% 정도가, 그리고 2000년에는 53~100% 정도가 유럽제작물 쿼터를 준수하였다. 단, 이태리만은 '99년에 42%, 2000년에 49%의 채널만이 쿼터를 준수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쿼터를 준수한 채널 수가 증가한 국가는 9개국이었으며, 감소한 국가는 덴마크와 영국의 2개국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핀란드 등 4개국에서는 비율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유럽제작물 쿼터는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독립제작물 쿼터 준수 현황

편성시간의 10%, 혹은, 제작 및 구매비용의 10%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유럽제작물에 할당하여야 하는 독립제작물 쿼터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준수현황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

<표 15> 독립제작물 쿼터 준수 현황

	총 채널 수			독립제작물 비율*(%)			쿼터 준수채널 비율(%)		
	1999	2000	증감	1999	2000	증감	1999	2000	증감
오스트리아	3	3	0	40.63	47.3	6.67	100	100	0
벨기에	17	18	1	35.64	34.46	-1.18	93	80	-13
독일	23	24	1	46.3	46.72	0.42	74	71	-3
덴마크	5	7	2	40.2	58.86	18.66	100	100	0
그리스	10	11	1	21.17	20.94	-0.23	91	92	1
스페인	40	45	5	36.44	40.24	3.76	95	96	1
프랑스	54	59	5	59	59.26	0.26	81	92	11
아일랜드	4	4	0	29	29	0	100	100	0
이태리	38	43	5	68.05	63.85	-4.2	79	70	-9
룩셈부르크	10	11	1	29.93	28.68	-1.25	70	64	-6
네덜란드	18	21	3	52	52	0	83	86	3
포르투갈	7	9	2	24.96	31.13	6.18	86	89	3
핀란드	4	4	0	23	29	6	100	100	0
스웨덴	22	25	3	27.94	34.63	6.7	48	58	10
영국	97	116	19	28.41	30.96	2.55	75.26	74.1	-1.16
합계	352	400	48						
평균				37.51	40.47	2.95	85.02	84.81	-.021

주: \*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유럽제작물에 할당된 편성시간, 또는 제작 및 구매비용의 평균 비율  
 자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2)

다. 독립제작물 편성 비율은 '99년 평균 37.51%에서 2000년 평균 40.47%로 2.95% 증가하였다. 독립제작물에 대한 10% 쿼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서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99년에는 21.17~59% 범위에서 2000년에는 20.94~59.26% 범위에서 독립제작물이 편성되었다. 독립제작물 편성 비율이 증가한 국가는 9개국이었으며, 감소한 국가는 벨기에, 그리스, 이태리,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이었으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제작물 쿼터를 준수하고 있는 채널의 평균 비율은 '99년 85.02%에서 2000년 84.81%로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준수하고 있는 채널의 비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99년에는 총 채널의 48~100% 정도가, 그리고 2000년에는 58~100% 정도가 독립제작물 쿼터를 준수하였다. 쿼터를 준수한 채널 수가 증가한 국가는 6개국이었으며, 감소한 국가는 5개국(벨기에,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영국)이었으며, 4개국(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은 변화가 없었다. EU 회원국 가운데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유럽제작물에 대한 편성 쿼터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 국가도 없으며, 요구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제작물 쿼터와 함께 독립제작물 쿼터도 전반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 3. 기타 규제

#### 가. 언어 쿼터

단일 국가 내에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여러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유럽의 특성상, EU 국가들은 대부분 특정 언어에 대한 쿼터를 할당하고 있다. 이 언어 쿼터는 국가 공용어의 사용을 확대하거나 소수 민족의 언어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규정된다.

대표적인 몇 개 국가만 살펴보면, 프랑스는 원작이 불어인 시청각 및 영화 작품에 관하여 언어 쿼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지상파방송은 특히 주시청시간대(prime-time)에 원작이 불어인 작품을 40%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케이블 및 위성 채널은 지상파방송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 비율은 보통 50% 이상이다.

포르투갈은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채널인 경우에 원작이 포르투갈어인 작품을 전체 편성시간의 50%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 가운데 25%는 포르투갈 영토를 벗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제작된 작품이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웨일즈 지방에 채널4를 S4C로 할당하여 웨일즈 언어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서는 채널3(ITV)을 통해 게일어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 나. 콘텐츠 유형별 쿼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들은 공영방송의 경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사들은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대중성이 떨어지는 소수 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민영방송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의무를 강제하기도 한다.

〈표 16〉에서 보듯이, 적지 않은 국가들이 방송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콘텐츠 유형에 대한 쿼터를 규정하고 있다. 이태리는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를 규정하고 있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등은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가 있다.

유럽제작물 관련 특정 콘텐츠 유형에 대한 투자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이다. 스페인 방송사들은 전년도 수익의 5% 이상을 유럽산 장편영화와 TV용 유럽 영화에 투자하여야 한다. 이태리의 모든 방송사들은 이태리 법에 따라 편성쿼터와는 별도로, 전년도 수익의 10% 이상을 유럽 제작자(독립제작사 포함)가 만든 시청각 프로그램 및 어린이용 프로그램의 제작 및 구입에 투자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TF1 방송사는 전년도 매출액의 0.6%를 원작이 붙어인 애니메이션 영화나 유럽산 애니메이션 영화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프랑스의 M6 방송사도 전년도 매출액의 1%를 원작이 붙어인 애니메이션 영화나 유럽산 애니메이션 영화에 투자하여야 한다.

#### 다. 투자 규정

영화 제작이나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투자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독립제작사의 제작물에 대한 10% 편성 규제와는 별도로, 몇몇 국가에서는 자국내 특정 방송사에게 독립제작물에 대한 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2001년에 공영방송사인 RTE로 하여금 2천만 IR파운드를 독립제작물의 제작 위임에 투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RTE는 2002년에는 2001년 방송법의 규정에 의해 독립제작물에 '적당량'을 투자하여야 한다. 벨기에 불어권의 공영방송사인 RTBF도 또한 독립제작사와의 공동제작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많은 공·민영방송사들이 독립제작물의 구입 및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벨기에 플레미쉬어권의 VRT, 핀란드의 YLE, 이태리의 Telepiù, 스페인의 Canal+와 TV3 등).

〈표 16〉 EU 국가별 기타 편성 규제

국 명	콘텐츠 유형별 쿼터	언어 쿼터	투자 규정
오스트리아	×	×	○ (ORF)
벨기에 (플레미쉬어권)	×	○ (유럽제작물 가운데 상당 비율은 네덜란드어 작품일 것)	×
벨기에(불어권)	×	○ (유럽제작물의 1/3은 불어작품일 것)	○ (방송쿼터, 의무투자)
덴마크	×	○ (일반적 명시, 비율은 없음)	○ (방송쿼터, 의무투자)
핀란드	×	○ (YLE)	×
프랑스	○	○ (40%가 불어작품일 것)	○ (의무투자)
독일	×	○ 브란덴부르크 법에서만 소르비쉬 문화 및 언어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	×
그리스	×	○ (25%가 그리스어 작품일 것)	×
아이슬랜드	×	○ (일반적 명시, 비율은 없음)	×
아일랜드	×	×	○ (RTÉ: 의무투자)
이태리	○ (어린이 프로그램 쿼터)	×	○ (의무투자)
리히텐슈타인	×	×	×
룩셈부르크	×	×	×
네덜란드	○ (교육, 문화 프로그램 쿼터)	○ (공영방송 50%, 민영방송 40%)	○ (NOS)
노르웨이	×	○ (일반적 명시, 비율은 없음)	×
포르투갈	○ (RTP: 문화 프로그램, 픽션물)	○ (포르투갈어 작품에 25%)	○ (RTP: 방송 쿼터, 의무투자)
스페인	○ (장편영화 투자쿼터)	○ (4개의 공식언어 가운데 한 언어에 50% 편성)	×
스웨덴	○ (문화 프로그램 쿼터)	○ (일반적 명시, 비율은 없음)	×
영국	○ (ITV, 채널4, 채널5)	○ (S4C, ITV)	○ (방송쿼터, 의무투자)

자료: EIM(2001).

영화제작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방송사들이 여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영화 및 TV 제작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사인 ARD와 ZDF가 연합하여 번데스랜드에서 시행되는 영화 발전 조치에 따르고 있다. 독일내 다른 지역에서도 또한 지역단위의 영화 발전 조치들이 있다. 이와 유사한 협정 및 활동은 노르웨이(민영방송사 TV2)나 스웨덴(공영방송사 SVT)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에서는 시청각 및 영화 제작 투자와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들에게 더 많은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송사들은 일년 수익의 얼마 정도를 '시청각 제작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COSIP)'을 위해 의무적으로 할애하여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공영방송사인 ORF가 오스트리아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해 투자할 의무를 지닌다.

특수한 사례로 지적될 만한 것은 포르투갈의 '파트너십 협정'으로, 이 협정은 혁신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협정은 문화부와 같은 공기관과 모든 국영 및 지상파방송 사업자(공영 RTP, 민영 SIC와 TV1)간에 이루어진다. 협정에 의해, 일반적으로 포르투갈 정부는 시청각 제작 지원을 높이기 위해 방송사들의 영화 제작에 대한 투자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 V. WTO시대 방송서비스 규제정책 방향

지금까지 방송을 규제해왔던 논리는 방송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방송은 소수의 제작자(정보원)가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송신하는 파급효과가 큰 미디어로서,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런 방송산업을 규제하는 논리는 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한 방송의 내용규제가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다채널 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방송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방송을 규제해 왔던 희소성과 공공성의 틀은 더 이상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대신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논리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WTO의 출범과 함께 서비스분야의 개방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방송서비스도 개방으로 표현되는 규제완화와 시장논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개방으로 인한 문제점은 시청자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외국문화에 대한 과도한 동경과 외국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외국 프로그램이 국내 프로그램을 대체함으로써 국내 제작기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외국 자본이 국내 방송산업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산업적으로는 외국 프로

그럼 및 사업자의 국내 진출로 산업이 활성화(부족한 프로그램과 채널 보충, 외국 자본 유입 및 선진 경영기법의 전수)되고 가입자 확대에 의해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사업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방안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WTO 양허협상에서 특히 중점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될 소유 규제, 편성 규제에 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현재 개방 수준이 분석 대상이 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편성쿼터의 수치(80%)가 높은 편이지만 투자 쿼터 등이 없기 때문에 규제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지상파방송은 문화적 할인의 영향으로 실제 국산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편성쿼터에서 요구하는 수치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의 국내 제작 편성쿼터를 현행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필요할 경우 협상과정에서 1차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소유 규제에 있어서도 지상파방송에 대한 외국인의 출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일본 및 EU 국가에서도 동일하다. 케이블TV와 위성에 대해서는 캐나다(20%), 프랑스(20%), 스페인(25%) 등은 우리보다 개방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개방협상에 임함에 있어 최대한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EU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의 대응 수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방송에 있어서 시장개방의 압력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단지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개방의 시기와 정도를 적절하게 추진하여 국내 방송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방송산업은 폐쇄정책과 보호 가운데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의 강화가 필요하다. 시장 개방의 시기와 방법은 국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해외 여러 나라의 규제 동향, 국내 관련제도의 보완 일정 등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 개방, 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 WTO시대에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산 콘텐츠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개방의 일정에 관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부문부터 먼저 개방하는 단계적 개방을 지향함이 마땅하다. 또한 쿼터제에 대응하여 국제 공동 제작이나 공동투자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채널의 재전송의 경우 발생 수익의 일정부분을 국내산업 발전에 일부 투자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해외 시장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구문모, “시청각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2002. 9. 27.
- [2] 김준동, “방송서비스 분야 협상의 논의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방송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2002. 11. 20.
- [3] 문화관광부,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2003. 2. 3.
- [4] 박소라,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의 변화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시장 개방과 문화정체성 확보 방안 연구」, 2001. 12.
- [5] 박천일, “위성방송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영상산업 진흥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 연구」, 2000.
- [6]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
- [7] 방송위원회, 「200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02. 12.
- [8] \_\_\_\_\_, “2003년도 방송프로그램 등 편성비율 고시”, 2003. 1. 8.
- [9]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방송정책기획위원회 종합보고서」, 2001. 10.
- [10] 손승혜, “해외방송의 국내 시장 진출 현황과 정책 방향”, 방송위원회, 외국방송재전송 승인 정책수립 토론회 발제문, 2001. 2.
- [11] 송경희, “방송서비스 시장 및 규제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방송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2002. 11. 20.
- [12]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정부, 서비스 시장개방에 관한 1차 양허안 확정”, 2003. 3. 21.
- [13] 정용준, “외국 위성방송 재송신-재검토 필요한 외국채널 전송과 방송시장 개방”, 한국 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회보」, 2000. 6.
- [14] 최현철,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및 시장점유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01-3, 2001.
- [15]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동향과 분석」, 통권 156호, 2002. 7. 15.
- [1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ifth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2002. 8. 11.
- [17] EIM(The European Institute for the Media), “Study on the provisions existing within the Member States and the EEA States to implement Chapter III of the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 2001. 5.
- [18] Hoskins, C. & Mirus, R., Reasons for the U.S. dominance of the international

trade in television programs, *Media, Culture and Society*, 10, 1988.

- [19]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1*, 2001.
- [20]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Special Session – COMMUNICATION FROM BRAZIL – Audiovisual Services”, S/CSS/W/99, Doc # (01 – 3408), 9 July 2001.
- [21]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Special Session – COMMUNICATION FROM SWITZERLAND – GATS 2000: Audio-visual services”, S/CSS/W/74, Doc # (01 – 2361), 4 May 2001.
- [22] WTO,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 Special Session – COMMUNICATION FROM THE UNITED STATES – Audiovisual and Related Services”, S/CSS/W/21, Doc # (00 – 5551), 18 December 2000.